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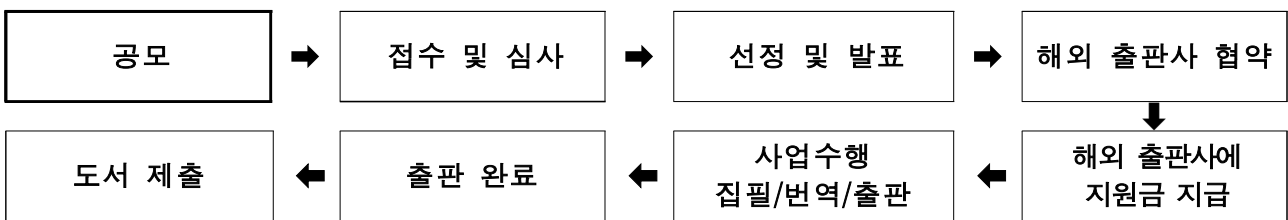
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〈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공모〉

1. 사업 소개

□ 사업 목적 및 취지

- 한국미술 관련 도서의 집필과 번역, 출판 지원을 통해 양질의 외국어 자료를 제공하여 해외 미술 전문가와 연구자의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 및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.

□ 사업추진 절차



2. 공모 및 지원 내용

□ 공모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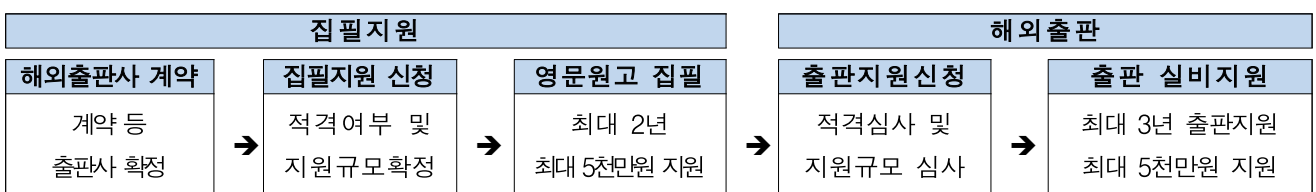
- 집필 및 연구지원 : 한국미술에 대한 신규 도서의 집필 비용 지원
- 출판지원 : 한국미술 관련 도서의 해외 출판을 위한 실비 지원

□ 지원 내용

- 집필 및 연구지원 : 신규원고 집필과 번역을 위한 집필비용, 번역, 감수비용 최대 5천만원 지원(1건 내외 선정)
- 출판지원 : 해외 출판을 위한 출판 실비(번역, 감수, 인쇄 실비 등) 최대 5천만원 지원 (2건 내외 선정)

- ※ 선정 이후 센터는 계약을 체결한 출판사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며, 해외 출판사로 지원금을 지급함
- ※ 집필지원 선정자는 집필 완료 후 출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(집필지원 이후 출판지원 신청 시, 번역비용은 신청할 수 없으며, 최대 지원금은 3천만원으로 한정, 집필+출판지원 최대 6천만원 지원)
- ※ 집필지원 및 출판지원 신청 시 협의한 출판 예정일 내 반드시 출판물을 제출해야 하며, 출판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80% 반납해야 함

□ 사업 진행도



3. 지원 신청

신청자격

- 해외 출판 계약이 확정된 저자 및 국내외 출판사

신청기간 : (1차) 2019년 3월 (예정) (※1차 공모 후 연간 수시 공모 운영)

제출서류 및 자료

- ① 지원신청서(지정양식, 국영문)
- ② 신청자 이력서/ 단체 소개서, 출판사 소개서(자유양식, 국영문)
- ③ 사업자등록증, 출판사신고필증(출판사의 경우)
- ④ 원고 요약본(A4 5매 내외, 자유양식, 국영문)
- ⑤ 출판 계약서

신청서 제출 방법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gokams.or.kr>)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
- 제출서류 전자파일 art-trans@gokams.or.kr 으로 송부
- ※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

4. 지원 심의

심의 방법 및 내용

- 중점 심의방향 : 내용의 우수성 및 적합성, 출판 계획의 합리성, 출판사의 역량, 책자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
- 심의 방법 : 외부전문가 서류심사 및 인터뷰 심사
- 심의 기준

구분	항목	세부 내용	기준치(%)
서류심사 및 인터뷰 심사	내용의 우수성 및 적합성	-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목적 부합성 - 기획 및 내용의 우수성 - 책자의 미술사적 가치 및 현장 필요성	10
	출판 계획의 합리성	- 출판 진행일정 및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- 출판 계획의 실현 가능성 - 예산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- 계약서 내 역할 구분 및 자원배분의 합리성 - 출판 후 프로모션 및 유통 계획의 구체성	40
	출판사의 역량	- 출판사의 시각예술 관련 출판 경력 및 인지도 -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협력의 적극성	30
	책자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	- 출판물의 해외 수용성 - 책자의 출판 및 활용계획 - 출판 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	20

전년도 평가 반영여부 : 단계별 지원으로 최종 결과물을 다음 단계 지원 심의 시 참고

5. 지원제외대상 및 유의사항

□ 유의사항

-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, 센터와 합의한 기간 이내 과업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반납 처리됨
- 표절원고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원고를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, 지원금은 100% 반납 처리되며,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동안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
- 출판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책자가 출판 되었음을 판권란에 로고와 함께 표기해야 함
- 협의된 기간 내 출판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, 계약은 파기되며 지원금은 반납됨
- 집필 완료 후 원고 분량이 계획의 80%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금 지급에 반영될 수 있음
 - 단, 사업종료 6개월 전, 중간보고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,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.
-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국고보조금 지침개정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성폭력범죄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(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(제7조제4항제3호 참조))
 - 성폭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(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조 제2항 제4호 참조)

6. 문의처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 시각지원팀 02-708-2274